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95
----------	-----

2023년 2월 28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2월 6일, 이상욱 의원(찬성자: 42명)
-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2월 28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욱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제 추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주민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주민협의회 주민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안 제16조제2호)

###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요

- 본 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6조에서 서울시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때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관련 분야 전문가에 대한 정보 등의 부족으로 주민대표가 전문가를 추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대표가 요청하면 시장이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1.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 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 지방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2. 제1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 연구기관의 이공계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b>2명</b>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 <b>2명(다만, 주민대표가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b>

## ■ 주민협의회 관련 전문가 구성 현황

- 주민협의회는 조례 16조<sup>1)</sup>에 따라 시장이 물재생센터별로 기초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음.
- 현재(2023.1. 기준)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에는 총 37명(중랑 10명, 난지 10명, 탄천 8명, 서남 9명)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탄천과 서남의 경우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 2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 2] 서울시 물재생센터별 주민협의회 구성 현황

(단위 : 명, 세대)

구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계
주민협의회 현황 (전문가 인원)	10 (2)	10 (2)	8 (0)	9 (1)	37 (5)
주변영향지역 가구수 (2023.1.30.조사기준)	약 897세대	약 577세대	약 6,797세대	약 5,414세대	약 13,685세대

## ■ 개정안 검토의견

- 안 제16조제2호는 주민대표만 관련 전문가를 추천토록 하였던 것을 주민대표가 요청한 경우에는 시장도 관련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1.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 지방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2. 제1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 연구기관의 이공계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

-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①복합악취농도 측정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③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시행할 때 주민협의회 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는데,
  - 일반 주민의 경우 하수도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상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견 제시가 다소 어려울 수 있어 현행 조례 제16조제2호에서는 주민대표가 추천한 관련 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sup>2)</sup>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 전문가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하여 추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3년간 주민협의회 전문가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중랑물재생센터를 제외한 3곳 모두가 주민협회의 관련 전문가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해 2021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음<sup>3)</sup>.

[표 3] 최근 3년간 주민협의회 전문가 구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중랑	2	2	2	2
난지	1	1	2	2
탄천	1	0	0	0
서남	1	1	0	1

- 따라서, 주민대표가 요청한 경우에 시장이 관련 전문가를 추천할

2) 서울특별시조례 제4886호, 2009.11.11., 일부개정 및 시행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1.12.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12.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주민협의회 구성이 현행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서울시(물순환안전국)는 본 개정안에 대해 주민대표가 시장에  
게 관련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지 않을 때는 기존과 같이 관련 전문  
가 구성이 원활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 대안으로, 주민대표의 전문가 추천 기간 경과 규정을 두어 기간  
경과 이후에도 추천이 없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전문가를 추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 주민협의회가 조례 규정대로 원활히 운영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95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이상욱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영한, 박철성, 박환희,  
성흠제,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봉준,  
이종태, 이효원, 임만균,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2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제 추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주민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주민협의회 주민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2명”을 “2명(다만, 주민대표가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